

#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기수 / 고려대 법대 교수

## 롯데쇼핑(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1998. 5. 2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100호/사건번호 9709유거1239

###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인 롯데쇼핑주식회사는 피심인의 납품업체인 (주)리리제과가 '96년 4월 30일 금강개발산업(주)의 현대백화점 부산점에 최초로 과자류를 납품하자 리리제과에 대하여 '96년 5월 3일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판매되는 리리제과의 과자류가 피심인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 피심인의 매장에서 철수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여 '96년 5월 3일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의존도가 높아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큰 리리제과로 하여금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판매중인 위 과자류 판매잔량(약 70만원 정도)을 전부 매입·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현대백화점 부산점에 과자류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96년 12월경에 96NY 브랜드로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입점하기 위하여 매장 내부공사를 완공하는 등 1,8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입점을 준비하고 있던 (주)대하패션에 대하여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입점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압력을 가하여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대하패션으로 하여금 입점에 정일 3일전인 '96년 12월 13일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1. 부당한 방법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참여의 자유, 거래처선택의 자유, 거래조건설정의 자유 등 자유의사의 보장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전국매장에서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거래의존도가 높은 납품 및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현대백화점에 납품 또는 입점을 못하도록 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동 납품 및 입점업체들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방법에 있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현대백화점은 일부 납품 및 입점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

있는 바, 피심인과 현대백화점은 서로가 백화점 업계에서 주요 경쟁상대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 법령의 적용 및 주문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매장에 납품 및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매장에 납품 또는 입점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  
실을
  - ① 2개 중앙일간지(全版)에 3단×10cm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 1회 게재함으  
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② 이 사건과 관련된 납품 및 입점업체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문안은 사전에 공정거래위  
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해설 및 평석

#### 1. 머리말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자, 국가는 사회적 정  
의와 안전에 대한 일정한 임무를 인식하고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곧 국가법질서에 경제질서가 포섭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정의·안전에 지향된 국가  
적 임무가 경제질서에 대하여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sup>1)</sup> 독과점의 형성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독과점이 형성되면 독과점기업이 단독으  
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이  
마비되고, 이것은 소비자의 이익침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sup>2)</sup> 또한 경쟁이 배제되는 결과 독과점기업 자체  
의 체질도 악화되어 기업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 등 국민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게

1)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2쪽 아래 참조.

2) 손주찬, 경제법, 1994, 74쪽 아래;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5정판, 1996, 29쪽 참조.

3) 이남기, 경제법, 최신판, 1996, 15쪽 아래.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 즉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그럼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소위 경제헌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등장하였다.<sup>4)</sup>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범목적에 비추어볼 때 경쟁업자의 과자류가 피심인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 피심인의 매장에서 철수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여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의존도가 높아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큰 경쟁업체로 하여금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위 과자류 판매잔량을 전부 매입·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과자류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사업활동방해가 문제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2.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통하여 동등한 경쟁의 조건이 되는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深化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sup>5)</sup> 이에 공정거래법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경제력 및 경쟁상의 차이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후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sup>6)</sup>

##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두가지가 있다. 미국과 독일법은 법에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해석에 의하여 규제하는 형식이고, 우리와 일본법은 추상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告示함으로써 금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거래계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법적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고시를 통하여 열거한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거래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착하여 규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6)</sup>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유형 또한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별표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sup>7)</sup>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일반지정)와 특수한 사업분야에만 지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특수지정)로 구분된다. 특수지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지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조치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특정분야, 특정행위로서 보다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sup>8)</sup>

4)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4쪽; 손주찬, 경제법, 1994, 233쪽.

5)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09쪽.

6)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이남기, 경제법-공정거래법-, 1996, 340쪽 아래.

7) 구법하의 유형과 그 입법례 등에 대하여는 손주찬, 경제법, 1994, 238쪽 아래 참조.

8) 손주찬, 경제법, 1994, 238쪽;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14쪽.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유 형	세 부 유 형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 당연위법행위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당연위법행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 당연위법행위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상대방제한
사업활동방해	기술부당이용 인력부당 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 행위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3. 사업활동 방해

1) 의의

사업활동 방해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유형 및 기준 제8호).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는 ①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서 모두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 할 것을 요구한다.<sup>9)</sup>

9)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87쪽

## 2) 위법성

경쟁저해성의 근거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한 경쟁수단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부당한 인력의 스카우트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쟁저해성'의 근거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그 위법성 요건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심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3) 적용범위

'96년 개정되기 전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활동방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규제하는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점과도 균형상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다. 이에 '96년 12월 30일 개정에서 거래관계에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sup>11)</sup>

## 4.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심결례

[심결례] 현대종합상사(주)의 사업활동방해(공정위 1994. 6. 21, 의결 제93-179호 9308조삼593, 심결집 13권 461쪽)

피심인 현대종합상사(주)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현대의 계열사이다. 피심인은 1991년도 '수출 70억불탑'을 수상하기 위하여 23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납품업체 등의 협력업체가 수출할 때 자신을 통하여 수출하도록 각 계열회사가 유도·알선·권장해 주고, 피심인 스스로 이들 협력업체와 접촉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각 협력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송부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납품업체 등이 수출시 피심인을 통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제3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에게 계열회사들이 납품업체에 대하여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결하였다.

## 5. 맺음말

'97년 말 IMF 긴급금융지원까지 초래한 경제적 난국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점을 노정시켰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하여졌다. 1960년 이래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놀라운 성장을 해온 한국이 갑자기 IMF구제금융 수혜자 및 그 관리체제하에 빠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10)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87쪽.

11)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88쪽.

있다.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소위 재벌이 경쟁력과 차입에 따른 사업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정경유착 및 상호보증에 의한 절제없는 차입경영에 기초를 두고 무분별한 사세확장을 펼친 것이 상당부분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개별기업들의 부실이 드러나도 이를 즉시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버린 데에 원인의 일단이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타개책으로서 경제법/기업관계법의 영역<sup>12)</sup>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구조의 선진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촉진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의 허용 등이 불가결하였으며,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경제법과 기업관계법 분야에서는 상법 중 회사편의 개정이 '98년 7~8월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이고,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이 '97년 말과 '98년의 몇 개월에 걸쳐 여러번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경쟁업체에 대하여 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압력을 가하여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경쟁업체로 하여금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및 경쟁업자의 과자류가 피심인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 압력을 가하여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큰 경쟁업체로 하여금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위 과자류 판매량을 전부 매입·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과자류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 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의도에 배제되는 행위로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IMF시대하에 공정거래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 하며, 힘을 무기로 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철퇴를 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린 시정조치에 수긍할 수 있다. ■

12) 이에 대하여는 윤세리, IMF시대의 공정거래법 개정, 「인권과 정의」 통권 제161호(19985), 81쪽 아래 참조.



##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가 국민의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에서는 월간 「공정경쟁」(공정협회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지는 공정경쟁 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러분의 글을 다음의 요령대로 보내주시시오.

###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보 내 곳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공정경쟁」출판 담당자 앞

전 화 : (02)775-8870~2

PC통신 : kfca2000(hitel, 천리안)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8. 6. 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평화플라스틱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3광고0296)</p>	<p>평화플라스틱공업(주)는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전국 각 지역 관공서에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수도권용 「파이프이음관」에 대하여 카다로그를 통해 광고하면서 중소기업청이 부여하는 신기술인증마크인 NT(New Technology)마크 및 국립기술품질원이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우수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품질인증마크인 EM(Excellent Machine)마크를 각각 획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다로그에 실린 동 제품사진 아래 또는 좌측 부분에 NT마크 및 EM마크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제품이 동 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p>
<p>한국컴팩컴퓨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3광고0371)</p>	<p>한국컴팩컴퓨터(주)는 '98.3.18.과 '98.3.23. 등 두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자신이 수입·판매하는 컴퓨터에 대해 광고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지는 IBM이 있으면 뜨는 컴팩도 있다”, “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인 IBM의 사세 또는 신용이 쇠퇴하고 있거나 쇠퇴한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대해 비방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SKYPASS) 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711약이1578)</p>	<p>(주)대한항공은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자사 및 신용카드사 등의 항공기 탑승실적 또는 이용실적 등을 계산하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좌석승급을 해 주는 자신의 마일리지보너스제도인 스카이패스(SKYPASS) 회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스카이패스(SKYPASS) 회원안내서에서 회원가입에 의한 마일리지보너스 제공은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급부로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동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급부내용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변경·취소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고객이</p>	<p>◎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해야 하며, 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고객의 서비스 향유에 대한 기대권의 침해의 정도가 크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최소한 사전통고나 유예기간의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회원수가 임의로 제한되거나 또는 예고없이 전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내용 및 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경우 당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라고 규정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주)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보너스클럽 회원 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04약이0488)</p>	<p>(주)아시아나항공은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자사 및 신용카드사 등의 항공기 탑승실적 또는 이용실적 등을 계산하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좌석승급을 해 주는 자신의 마일리지보너스제도인 아시아나보너스클럽 일반규정인 회원안내서에 회원가입에 의한 마일리지보너스 제공은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급부로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없이 동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보너스클럽 프로그램, 보너스 제공기준 및 기타 요소들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으로서 그 성질상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회원가입안내서상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보너스클럽 프로그램의 절차나 방침 등에 대한 운용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분쟁 발생시 아시아나항공의 해석이 우선합니다"라고 규정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p>(주)캡스 및 (주)에스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9712유거1720, 9804유거0420)</p>	<p>(주)캡스 및 (주)에스원은 '97년 12월을 전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송파지역에 소재하는 한산초등학교·강일중학교 등과 제주도지역에 소재하는 홍산초등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 각각 무인경비기계를 수주</p>	<p>◎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p>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하기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무인경비기계용역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회사규모나 통신회선, 관제운영상황이나 기기보수점검 등과 같이 자신이 공급하는 무인경비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자신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한성자동차(주)의 부당한 병행수입저지행위 (9609경축1353)	한성자동차(주)는 자신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MERCEDES BENZ)로부터 독점하여 수입·판매하는 벤츠자동차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자신의 독점 수입·판매권에 의하지 않고 캐나다·미국 등지의 자동차판매업자로부터 벤츠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인 (주)오토월드에게 캐나다 자동차판매업자인 Three Point Motors 등으로부터 수입·판매된 벤츠자동차 40여대의 차량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추적·확인한 후 이를 독일 벤츠사와 미리 체결한 독점적 수입대리점계약에 따라 통보하고 독점판매권이 침해될 경우 받기로 한 커미션을 청구하여 차량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1대당 평균 약 150만원을 지급받는 등 독일 벤츠사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의 다른 경로를 통한 벤츠자동차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도록 하는 부당한 병행수입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부당한 병행수입저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1998. 6.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 (9804공동0620)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지부는 1997.12.2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사진재료값의 상승에 따라 필름현상료 및 사진인화료 등을 인상할 것을 건의해움에 따라 필름현상료를 1롤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사진인화료를 1장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가격표를 만들어 자신의 회원 등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필름현상료·사진인화료의 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매일유업(주)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9804독관0498)	매일유업(주)는 자신이 제조하는 조제분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지난 '97년 12월 이후 분유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97.12.23. 조제분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동 가격인상시에 회사공급가 외에 소비자가격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기존에 4,200원 내지 9,500원하던 소비자가격을 4,800원 내지 10,800원으로 인상하여 결정하고 12.26. 공장완제품 생산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각 지점에 가격표와 함께 통지하면서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는 교육 실시,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조제분유제품 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교육시켰으며, 지정된 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을 종용하거나 제품공급 중단예정일을 통지하여 자신이 지정한 재판매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	<p>◎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66,000천원</p>
남양유업(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9804독관0559)	남양유업(주)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이 조제분유 가격을 인상한 '97.12.26.부터 자신이 조제분유 가격을 인상하기 하루 전인 '97.12.31.까지 수도권 지역에 조제분유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비해 조제분유 제품출고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조제분유제품의 출고량을 조절하였으며, 제품판매가격은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등의 독립된 유통사업자가 당해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영업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형태로 소비자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지 않는 유통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가격을 점검하여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 위반	<p>◎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506,000천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전지방법무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9802전사0238)	대전지방법무사회는 1995.1.13.과 11.7. 및 1997.1.10. 지부장회의 및 1997.2.17. 이사·고문·감사연석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1998.2.17.에 합동	◎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무소에서 탈퇴한 후 개별 법무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합동사무소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법무사시행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서 법무사의 사무원을 5인까지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10.21. 이사·고문·감사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법무사의 사무원 수를 4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고, 구성사업자가 사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부내의 구성사업자 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된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부장을 경유하여 자신에게 제출토록 하면서 동 신청서에 지부장의견란이 공란일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무원 채용을 제한하였으며, 구성사업자가 사건수임시 받게 되는 보수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각 지부 등에 예치하고 가입기간 또는 가입지역에 따라 차등배분 받거나 균등배분 받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소속지부의 관할지역 안에서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3호 위반</p>	<p>사실을 대전지방법에서 발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충청남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 서천군지회의 경쟁제한행위 (9803전사0266)</p>	<p>충청남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 서천군지회는 1998.1.24. 구 통상산업부의 액화석유가스 가격인상 고시에 의하여 충전소의 부탄가스 가격이 인상되자 부탄가스의 가격은 구성사업자 각각의 판매 및 경영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1.2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에 소재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탄가스(13kg/1통)의 판매가격을 종전 12,000원에서 지역에 따라 13,000원 내지 14,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동 부탄가스 판매가격의 인상이 지방신문 등에 의하여 문제시되자 14,000원으로 인상하였던 서천군 서천읍 및 장항읍 지역에 소재하는 5개 구성사업자들의 부탄가스 판매가격을 종전과 같은 13,000원으로 재조정하여 통보하는 등 서천군지역의 부탄가스판매업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울산빙과대리점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 (9802부사0166)</p>	<p>울산빙과대리점협의회는 소매점에 대한 빙과류 공급 가격은 구성사업자 각각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항입에도 불구하고 해태제과(주) 등 주요 빙과류제조회사들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한 빙과류대리점에게 매월 제품사입가를 기준으로 8%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오다 '97년 10월부터 자금난 등을 이유로 동 장려금의 지급율을 3%로 인하조정하자 '98.2.4. 정기모임을 갖고 구성사업자들의 영업이윤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동안 대형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해오던 빙과류 공급가격할인제를 '98.2.5.부터 폐지하고 일반소매점과 동일하게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75%의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지역 빙과류 도매업분야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p>
<p>(주)시사영어사의 ECC 어린이 영어교실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 (9802약일0131)</p>	<p>(주)시사영어사는 『ECC 어린이 영어교실』(이하 ECC라 한다)이라는 프랜차이즈 형식의 어린이 영어학원을 개설하면서 사용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에 동 가맹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가맹계약자에게 그 영업지역 내에서 유사업종의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맹계약자에게는 유사업종의 경업을 제한하는 반면에 자신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ECC 이외의 학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규정을 사용하였으며, 가맹계약자에게 "YBM-시사영어사"의 명예와 신뢰도 및 "ECC"의 상표와 동일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준은 가맹사업자인 자신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의 로열티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가맹계약자가 6개월 이내에 학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및 동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가맹계약자가 가맹료와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가맹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면통지로 인해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p>(주)동일주택 및 (주)삼정도시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3부사0305)</p>	<p>(주)동일주택 및 (주)삼정도시개발은 공동명의로 '92년 2월부터 '93년 10월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에 소재한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 제2차분 1,049세대에 대하여 약 3,000매의 분양안내전단, 5,000부의 분양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주택분양과 관</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경상남</p>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련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지하층의 설치의무지역이 아니어서 주택공급면적에 포함될 수 없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광고의 평형별 또는 분양면적 표시란에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공급받는 주택의 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6호 위반</p>	<p>도 지역에서 발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31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01약일0055, 9804약일0582 내지 0597, 0599 내지 0612)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조흥은행, (주)한국상업은행, (주)제일은행, (주)한일은행, (주)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주)국민은행, (주)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주)신한은행, (주)한미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한국장기신용은행,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동화은행, (주)대동은행, (주)하나은행, (주)보람은행, (주)평화은행, (주)대구은행, (주)부산은행, (주)충청은행, (주)광주은행, (주)제주은행, (주)경기은행, (주)전북은행, (주)강원은행, (주)경남은행, (주)충북은행)</p>	<p>한국산업은행 등 31개 외국환은행은 각각 수출·수입·내국신용장 발행·내국신용장 환어음매입(추심)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수출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외국환업무취급세칙' 등의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약관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시에 자신의 적정수익이 반영된 수입대금 입금예정일까지의 환가료 및 만기연장의 경우 동 연장에 따른 추가이자를 이미 징수하였으므로 환어음 부도 이후에 발생한 추가비용은 발생한 비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음매입일로부터 소급하여 정상적인 환가료의 두배가 넘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매입한 환어음이 부도된 경우에는 부도발생시점 이후부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므로 이 때부터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매입환어음의 부도시 연체시점을 매입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1998. 6.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p>	<p>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을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p>	<p>◎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p>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9802약이0203)	<p>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은 보증한도책임 및 보증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계약에 따라 보증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며, 어음만기일이 보증기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음채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원인채권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동 보증의 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보증책임까지도 전적으로 부정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어음발행 또는 배서 등에 대해 당초 기일이 연장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해당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토록 함</p>
<p>(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및 거래거절강요행위 (9802부사0161, 9602부사0215)</p>	<p>(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은 '98.1.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평소 다른 서적도매상에 비해 서적소매상에 대한 거래조건 및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특정 서적도매상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공급하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98.2.11.부터 2.21.까지의 기간 중 동 서적도매상의 사업장 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봉쇄한 차량 측면에 동 서적도매상이 취급하는 서적류를 할인판매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산광역시지역 서점소매업 분야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특정 서적소매상과의 거래개시 및 계속여부는 각각의 서적도매상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지역의 서적도매상들에게 '98.1.30. 및 2.2.에 2회에 걸쳐 국제신문에 서적할인판매 광고를 하고 서적을 할인판매한 특정 서적소매상에 대하여 서적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p>	<p>◎ 경쟁제한행위 및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지역에 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서적도매상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적대금의 지불을 증지하고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을 통지하는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거절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	

1998. 6.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귀포중형덤프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 (9803광사0287)	서귀포중형덤프연합회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경영전략, 원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97.12.28. 자신의 구성사업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1998년 1월부터 서귀포지역의 중형덤프형 화물자동차(45톤~8톤)의 운임을 종전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체명의로 '98.1.10. 서귀포지역 36개 건설업자 등에게 협조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중형덤프형자동차의 운임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서귀포지역의 중형덤프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제주덤프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 (9804광사0415)	제주덤프연합회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경영전략, 원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97.8.4.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97.9.1.부터 제주지역 1일 기준 15톤 덤프트럭대여료를 종전 20만원선에서 25% 인상된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7.12.29. 열린 정기총회에서 '98.3.1.부터 동 덤프트럭임대료를 25만원에서 8% 인상된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체명의로 '97.8.8.과 '98.2.22.에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동 인상에 따른 협조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등 15톤 덤프트럭대여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제주지역 덤프트럭대여사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제주지방에서 발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제주지역 3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9803광사0286) (제주시굴삭기연합회, 서귀산남굴삭기연합회, 서부지역굴삭기연합회)</p>	<p>제주시굴삭기연합회 등 제주지역 3개 사업자단체는 '98.1.31. 모임을 갖고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98.3.1.부터 굴삭기임대료를 종전보다 약 20%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98.2.2. 제주시굴삭기연합회 사무실에서 재차 모임을 갖고 공동명의로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회원 및 대한 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회원들에게 굴삭기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항을 문서 및 전화로 통보하고 건설업체가 굴삭기 대여 요청을 할 경우 3.1.부터 인상·시행하기로 한 굴삭기임대료를 준수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등 단체교섭 등을 통한 합의의 방법으로 제주지역 굴삭기 임대료를 인상하고 각각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굴삭기임대사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들의 모든 구성사업자와 굴삭기임대인상문서를 통보한 건설관련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1998. 6.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12개 시·도건축사회 및 2개 건축복지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9802공동0233)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회 경남</p>	<p>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 12개 시·도건축사회 및 2개 건축복지회는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리건축사사무소 등을 설립하였으며, 1996.11.28.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4층 이하, 연면적 1,000㎡미만의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감리업무를 분리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후 설계·감리업무 분리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8.2.1.부터 설계·감리업무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로 하여금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각각 해당지역 감리용역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및 강원도건축사회는 감리보수액의 기준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가 받은 감리보수액을 특정 은행계좌 등에 예탁하도록 하거나 그중 일정액을 상조회비 및 감리건축사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p>	<p>◎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및 전북건축사회를 제외한 지역별 감리건축사사무소를 폐쇄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0,000천원</li> <li>· 광주광역시건축사회: 30,000천원</li> <li>· 대전광역시건축사회: 35,000천원</li> <li>· 울산광역시건축사회: 25,000천원</li> <li>· 경기도건축사회 :120,000천원</li> </ul>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복지회,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복지회	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건축사회 :35,000천원</li> <li>· 충청북도건축사회 :35,000천원</li> <li>· 전북건축사회 :45,000천원</li> <li>· 전라남도건축사회 :30,000천원</li> <li>· 경상북도건축사회 :50,000천원</li> <li>· 경남건축사회 :65,000천원</li> <li>· 부산광역시건축사복지회: 120,000천원</li> <li>· 대구광역시건축사복지회: 100,000천원</li> </ul>

1998. 6.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보해양조(주)의 거래거절행위 (9802광사0106)	보해양조(주)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주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합명)진로주류, (유)광미상사 등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97.6.5.~7.4. 및 '98.1.4.~3.6. 등의 기간 중에 주류공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주류도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 (9802광사0182)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세버스의 요금은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 전세버스의 요금에 대해 '98년 1월초에 「제주도관광전세버스요금표」를 작성한 후 '98.1.21. 및 1.3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전세버스요금을 2.1.부터 동 요금표대로 받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98.1.9.과 1.22. 및 1.23.에 전국 13개 시·도관광협회 및 제주도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제주도관광협회의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및 국제제2분과위원회 등에게 각각 통보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전세버스요금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제주도지역의 전세버스운송사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와 자신으로부터 제주도관광전세버스요금표를 통보받은 전국 13개 시·도관광협회와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여행사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li> <li>◎ 과징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500천원</li> </ul> </li> </ul>
(주)대우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2광사0237)	(주)대우는 '95.11.15~11.30.까지 견본주택을 방문한 방문객 등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산지역에 배포한 광고전단 50,000매를 통해 자신이 분양하는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소재의 “군산나운 대우아파트” 총 260세대 중 1차 분양시 미분양된 31평형 196세대에 대한 2차 분양을 실시하는 광고를 함에 있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관련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각각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어 피분양자에 대한 무이자융자금 1,000만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조건이 실제로는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할상환임에도 불구하고 “잔금납부일인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후 원금상환”이라고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써 동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동진특수화학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4광고0417)	동진특수화학은 '98.4.8. 동아일보에 자신이 제조하는 일산화탄소중독방지제인 「위즈덤」의 판매 및 대리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SBS TV에 광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SBS TV에 광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동 TV에 광고했거나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자신이 독점 생산하는 「위즈덤」의 '97년도 국내 총매출액이 266백 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연간 5천억원 국내시장”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시장규모가 커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나 임상실험 결과도 없이 “세계가 인정하는 발명품”, “쇠퇴한 뇌기능을 회복시키는 최첨단 발명품”, “10여년의 연구 끝에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마치 동 제품이 쇠퇴한 뇌기능을 회복시키는 최첨단 발명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광주이동통신(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9803광사0327)	광주이동통신(주)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서의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94.9.15. 자신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복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함은 물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주)에이팩스정보통신이 '96.6.1.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SK 텔레콤과 이동전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자 '96.7.15. 동 대리점에게 경쟁사와의 대리점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 대리점이 이에 불응하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 중인 140개 대리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